
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)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소송구조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결정(2018마6041)을 반영하여, 일정한 경우 직권에 의한 추심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에 앞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에게 최고하여야 하고, 「민사소송법」 제112조를 준용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대등액에서 상계되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 신설)

3.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)

일부개정예규안
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3호의 추심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(이하 이 항에서 “양 당사자”라 한다)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양 당사자(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변호사를 포함한다)에게 소송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의 제출을 최고하여야 한다[전산양식 A○○○○○].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12조를 준용한다.

전산양식 A○○○○○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[전산양식 A○○○○○]

○○지방법원
최고서

사 건 20○○가단○○○○
원 고 ○○○
피 고 ○○○

위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관련 소송구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가 지출한 소송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·법무사 비용, 감정료 등)을 별지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(영수증 등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

관 사 ㉠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○○지방법원 제○단독 법원주사 ○○○

전화(○○) ○○○ - ○○○○

팩스(○○) ○○○ - ○○○○ e-mail : @scourt.go.kr

[별지]

소송비용계산서

비용 항목		비용액	참고사항	
제1심	인지대	원		
	송달료	원		
	변호사 보수	착수금:	원	
		사례금:	원	
	소송출석여비(교통비, 식대, 일당)	원		
	감정료	원		
	증인 여비	원		
		원		
		원		
		원		
		원		
	원			
제2심	인지대	원		
	송달료	원		
	변호사 보수	착수금:	원	
		사례금:	원	
		원		
		원		
		원		
	원			
제3심	인지대	원		
	송달료	원		
	변호사 보수	착수금:	원	
		사례금:	원	
	원			
합계금		원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납입결정 등) ①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7조(납입결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 제3호의 추심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(이하 이 항에서 “양 당사자”라 한다)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양 당사자(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변호사를 포함한다)에게 소송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의 제출을 최고하여야 한다[전산양식 A○○○○].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12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7712